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암반구간 보조기층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9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8. 8. 12. ○○○○시 ○○구 ○○동 ○○○-○○에 있는 ○○○○(주) (대표자 ○○○)와 ‘○○-○○간 국지도 도로건설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96,738,180,000원¹¹⁶⁾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8. 18. 착공하여 2017. 8. 17.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암반구간에 보조기층 설치가 반영되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구 국토해양부, 2011. 8. 제정)」 2.1(일반사항) 및 2.2(포장단면 구성)에 따르면 노상이 풍화암을 제외한 양질의 암반으로 구성된 구간(50m 이상)은 토공부에 비하여 노상의 지지력이 크므로 경제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그 대신 침투수의 배수를 위한 필터층¹¹⁷⁾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6) 2016. 7. 1. 총공사부기금액이 104,965,000,000원으로 변경계약함

117) 필터층 두께는 필터층이 포화된 상태에서 50%배수가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2시간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고 최소두께는 15cm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사의 필터층 두께를 산정한 결과 15cm가

그런데 경상남도(○○과)에서는 ‘○○-○○ 도로건설공사’의 측점 1+920부터 측점 2+020까지 100m 구간이 암반구간이므로 경제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기층 34cm를 생략하고 필터층 15cm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보조기층 대신 필터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시공될 경우 공사비 10,800,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총 3개 공사에서 보조기층 대신 필터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22,521,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암반구간 보조기층 생략에 따른 공사비 절감현황“

공사명	연장(m)		공사비(천원)		
	전체	암반구간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2,162,188	2,140,367	감 22,521
○○-○○간 도로건설공사	10,415	100	26,600	15,800	감 10,800
○○-○○간 도로건설공사	12,030	180	1,808,400	1,799,600	감 8,800
○○-○○간 도로건설공사	14,300	80	327,888	324,967	감 2,921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위 공사의 보조기층을 생략하고 필터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22,551,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